

#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년 9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2일, 고영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9월 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이 있으나 헌혈유공패(장)의 수여기준 및 신청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지급대상을 다회헌혈자로 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을 “다회 헌혈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지급 대상에 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변경함(안 제6조제4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대상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패(장)을 받은 사람에서 다회 헌혈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는 2개소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도 있으나,
- 헌혈유공패(장)의 수여기준 및 신청절차 등이 상이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됨.

기 관 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운영형태	보건복지부 산하 헌혈의 집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가기반시설
운영사항	혈액원(15개), 헌혈의집(153개소), 헌혈버스 운영	헌혈카페(19개소), 헌혈버스 운영
유공패 수여 횟수	30회, 50회, 100회, 200회, 300회	15회, 25회, 50회, 70회, 100회, 200회, 300회
유공패 수여 기준	대한적십자사 헌혈 횟수 50% 이상 이면 한마음혈액원 헌혈 횟수도 인정	대한적십자사 헌혈 횟수 불인정

#### - 최근 5년간 서울시 인구대비 헌혈 현황(출처 : 서울시 통계)

년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헌혈실적(건)	975,868	900,964	818,973	799,823	846,646	920,655
헌혈률(%)	10.0	9.3	8.5	8.4	9.0	9.8
인구수(명)	9,721,190	9,729,107	9,668,465	9,509,458	9,428,372	9,386,034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